

1. 개정이유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을 합리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 표준직업분류 및 만 나이 통일법 등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 폐지(안 제2조)

현재 구직신청 시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원 확인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 개선(안 제18조 및 제19조)

1) 직업상담원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경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2) 시설요건 개선(안 제18조)

현행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을 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와 부합하도록 개정 (1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하는 한편,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법 제 19조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대면상담·구직자 교육의 필요성이 낮아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도 직업소개가 가능함을 고려,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 제외.

다.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현재 서식 변경 시 사업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정한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변경승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강화

라. 연령 표기 규정 정비(안 제41조의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마.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현행화(안 별표1)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현행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국회의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등은 제외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개선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기간의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2호의2호, 2호의3호, 7호, 14호, 15호, 20호, 33호, 43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를 “구직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구직신청서(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는 구직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무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에 대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영 제21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소개요금 약정 등 법에 따른 구직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서면 요건을 갖춘 형태로

취해질 수 있을 것

2. 사업장 주소지, 연락처 및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어 등록할 것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19조제2호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라. 노동조합 또는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나.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3호 및”을 “제1항제2호 내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근로자수, 주소, 모집직종, 모집인원, 직무내용, 임금, 근무시간, 퇴직급여, 근무장소, 고용형태
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취업조건(희망직종, 근무지역, 희망임금, 고용형태, 근무가능시간)

제41조의3제3항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13호 중 “간판”을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으로,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을 “명칭,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가목16)차) 위반사항란 차)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을 “사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를”로 한다.

- 1)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2)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등록기준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첨부 서식>”으로 하고 첨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허가관청담당자확인”을 “등록·신고 관청 담당자 확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급 · 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 해당자	비고
112	기업 고위 임원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연구 관리자(1311), 교육관리자(1312), 경찰 관리자(13132), 소방 관리자 (13133), 교도 관리자(13134)는 제외한다.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 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51	대학교수 및 강사	대학 시간강사(2512)는 제외한다.
261	법률 전문가	판사 및 검사(2611)는 제외한다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 해당자	비고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비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에 따른 것임.

구직신청서(상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최초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취업알선 [] 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훈련 [] 기타()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즉시 [] 대기 기간 필요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품 가입 동의 여부(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여성가장 [] 중증장애인 [] 섬 지역 거주자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품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비동의하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 함)

6.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구직신청서(일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최초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에 연락하여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자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4.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 정보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알림수신 설정 [] 전자우편 [] 문자 서비스

희 망 취 업 조 건	희망직종	직종명	희망입사형태	(경력기간)
			[]신입 []경력	(년 개월)
			[]신입 []경력	(년 개월)
	근무지역	1순위()시·도()구·군 2순위()시·도()구·군	[] 지역무관	[] 재택근무
	희망임금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원 이상 [] 면접 후 결정 가능		

기 타 사 항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구직신청서(장애인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최초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자원본인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_____)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취업알선 ☐ 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훈련 ☐ 기타()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즉시 ☐ 대기 기간 필요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여성가장 [] 중증장애인 [] 섬 지역 거주자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⑥-2 휴대전화번호	
⑥-3 팩스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4 이메일주소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해당(홈페이지주소 :) [] 비해당		
⑬ 임원 주민등록번호	1)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

신청인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번호 *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직업상담원 *				
	사업소	동산	원		
	자산상황 *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				
	주 소개직종 * (한국표준직업 분류코드)	1)		()	
		2)		()	
3)		()			
겸업내용 *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종 사 자 명 부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도 이 서식에 적습니다.

직책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담당 업무	학력	주요경 력	채용연 월 일	해임연 월 일	자격증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소 개 요 금 약 정 서

구인자	사업체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구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약 내용	임금	총액 원		
	임금지급형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취업장소	
	소정근로시간	일 ____시간, 주 ____시간	종사자업무	
	근로계약기간	. . . ~ . . .		
	기타			
소개 요금	요율제	구인자 부담액		구직자 부담액
		임금의 ()%	임금의 ()%	
		금액 원	금액 원	
	※ 회원제인 경우	회원기간	구인자 월회비(원)	구직자 월회비(원)
		. . . 부터 . . . 까지		
	소개요금 지급일자		비 고(기타 약정)	
	※ 당일일시불지급, 월별분할지급 등 당사자 간 정한 지급일자를 기입		※ 소개 근로자의 중도퇴사, 일용근로자의 상용전환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직업소개요금에 관하여 약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직자 (서명 또는 인)
구인자 (서명 또는 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체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고내용	모집된 근로자가 취업할 사업내역	취업국	사업명(현장명)		
		사업체명	사업(현장) 소재지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방법	
		기본급(\$)	여비부담자	숙식비 부담자	
		재해보상부담자	취업기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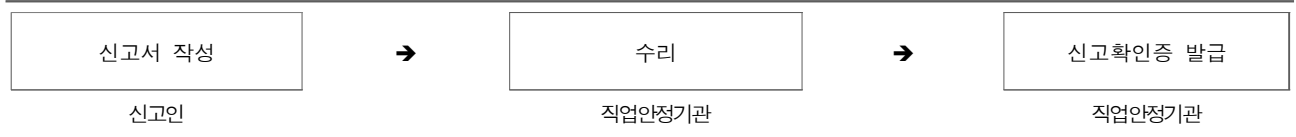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에 같음하여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와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의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첨부 서식>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동일사업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국외 취업자 모집 신청서(구인 기업용)

해외 기업 현황	취업할 국가	(국가번호:)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현황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사업내용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구인 사항	모집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직종 기재		모집인원 명
	모집방법		직무내용	
사항	경력	[] 신입	[] 경력(년 월 이상, [] 필수 [] 우대)	[] 관계 없음
	학력	[] ~ [] [] 관계 없음		
근로 조건	임금	[]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원 ~ []원		
		상여금 별도 ()% *산정기준 []연봉 []기본급		협약가능: [] 임금 [] 근무시간
	근무시간	: ~ : (휴게시간 : ~ :)		주()일 ()시간
	근무장소			
	퇴직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 [] 해당사항 없음(근로계약기간 1 년 미만 등)		
	고용형태 (근무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시간(선택)제 [] 대체 인력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 계약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파견 근로 [첨부서류 제출]		
근무 여건	여비 부담자	☐ 구인자 ☐ 구직자	식비 부담자(중식)	☐ 구인자 ☐ 구직자
	재해보상 부담자	☐ 구인자 ☐ 구직자	숙박비 부담자	☐ 구인자 ☐ 구직자
전형사항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기타		
	채용담당자	성명	전화	핸드폰 이메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33호서식(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의 첨부서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 서식[국외 취업자 모집 신청서(구인 기업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해외 기업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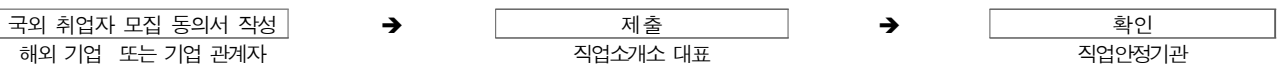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직업소개사업자 대표 귀하

유의사항

- 국내 구직자를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 대표 또는 기업 관계자는 “국외 취업자 모집 동의서”를 작성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자는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국외 취업자 모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43호서식]

직원명단

우리 직업소개소의 종사직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명단과 종사직원의 이름표를 대조한 후 상담에 응하십시오.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직업상담을 하지 마십시오.

사진	직위 및 담당	성명	등록·신고 관청 담당자확인
3cm×4cm			

※ "직위 및 담당"란은 대표자, 직업상담원, 일반 종사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57mm×364mm 이상
(보존용지(1종) 7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인·구직 신청의 수리 등)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u>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u>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구인·구직 신청의 수리 등) ① ----- ----- ----- ----- ----- ----- ----- ----- ----- ----- <u>구직신청서를</u>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제1항에 따른 구직신청서(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는 구직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u>

③ ~ ⑤ (생략)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 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신설>

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 기준) 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에 대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영 제21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소개요금 약정 등 법에 따른 구직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서면 요건을 갖춘 형태로 취해질 수 있을 것

2. 사업장 주소지, 연락처 및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어 등록할 것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 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u>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u> <u>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u> <u>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u> <u>라. 노동조합 또는 사업체</u>
<u>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u>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u> 이 있는 사람 <u>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u> <u>나.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삭 제></u>
<u>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삭 제></u>
<u>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u>	<u><삭 제></u>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 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삭 제>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삭 제>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 부 비치)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 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 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 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 부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제1항제2호 내지 -- ----- ----- ----- ----- -----. 1.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 서: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

<신 설>

1. · 2. (생 략)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별표1]

-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근로자 수, 주소, 모집직종, 모집인원, 직무내용, 임금, 근무시간, 퇴직급여, 근무장소, 고용형태

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

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취업조건(희망직종, 근무지역, 희망임금, 고용형태, 근무가능시간)

3. ·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20세 -----

-----.

④ (현행과 같음)

[별표1]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

13.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전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별표2]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다. ~ 마. (생략)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

13.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별표2]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1)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차)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차) 간판에 사업소의 명칭, 전화
번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직업상
담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은 이 규칙에 따른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